

Working Paper 99-18

국토계획 집행체계의 개선방안

양 지 청

국 토 연 구 원

차 례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0
3. 연구의 추진방법	11
제2장 국토계획 집행·추진 관련 전문가 인터뷰조사	13
1. 인터뷰 조사의 목적과 방법	13
2. 전문가 인터뷰 조사항목	13
3. 분석특기사항	14
제3장 국토계획의 동향 및 문제점	16
1. 국토계획의 성격	16
2. 국토계획의 기간	16
3. 국토계획에 따른 국토문제	17
1) 『국지중심의 국토구조』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지속	17
2) 지역간 대립·갈등 심화로 인한 국가응집력 약화	17
3) 난개발, 환경악화 및 관광·여가활동 기반의 불비	18
4)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국토	18
5)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18
6) 국토 3면의 해양 및 지정학적 조건의 미활용	18
7) 남북한의 분단	19
4. 국토계획 추진체계의 문제점	19
1) 관련계획간의 연계성 및 보완성 결여	19
2) 국토계획과 부문별 계획간의 연계성 결여	20
3) 국토개발사업의 집행체계 효율성 저하	20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에 효율적 역할배분 결여	21
5) 불확실한 계획내용의 확정	21

6) 급변하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탄력적 예측·계획체계의 부재	21
제4장 국토계획 집행/추진체계의 동향과 기본방향	22
1. 계획 추진체계의 분석과 애로요인	22
2. 집행체계 개선의 기본전략	23
3. 집행체계 개선 기본방향	24
4. 재정부문 개선 기본방향	26
제5장 국토계획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29
1. '국토기본법'의 제정운영	29
2. 국토관련 지표 및 국토센서스 조사체계의 구축운영	30
3. 계획계약제(plan contract)의 운영	31
4. 조직, 재원, 법제도의 효율적 연계 확보	32
부 록	34
참고문헌	40

표 차례

<표 3-1> 현행 국토계획의 종류	19
<표 4-1> 계획집행 추진 절차	23

그림차례

<그림 1-1> 집행 추진 3요소	8
<그림 5-1> 집행체계 개선 흐름도	29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국토계획을 3차에 걸쳐 10년간의 계획기간으로 추진해 옴
 - 국토종합계획은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 주는 물리적 공간계획으로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
-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인·경부고속도로, 다목적댐건설, 경인 및 울산지역의 대규모 공단 조성
 -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도시계획법(1962) 등 제정
- 1970년대에는 국토개발정책의 종합청사진 성격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72~'81)을 시행
- 1980년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82) 운영과 제2차 국토종합계획('82~'91)을 시행하여 수도권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990년대에는 제 3 차 국토종합계획('92~'2001)에서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수도권 정비, 서해안 신산업지대 조성 추진과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 이러한 여러 분야의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발 일변도의 국토정책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실질적 지방육성책의 제시없이 구호로만 지역균형을 제시하였으며 조정·통합기능·집행력은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여러 비판이 제기됨

- 특히 지금까지의 국토계획은 급변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수준을 탄력적으로 반영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임
- 단순한 청사진적 계획의 성격이 강하여 현실과 괴리감이 존재하고 순수 경제정책과 조화가 부족
 - 거시지표에 대한 예측운영평가 체계의 부재로 변화하는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곤란하며 계획의 실현성 확보를 보장하기 어려움
 - 또한 추진조직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재로 계획집행체계의 기반 취약
- 각 부문이나 지방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에 대한 검토/상호 협의·조정할 기능의 부재와 관련계획의 남발로 계획추진체계 혼란
- 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재원, 조직, 법·제도를 통한 이에 대한 명확한 체계의 정립이 요구됨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국토계획 집행 / 추진 관련전문가 서베이 분석
 - 국토계획의 성과, 기여에 대한 반응
 - 국토계획의 집행과 관련한 성격 규명 방안
 - 예산 배분 집행간의 연계성에 대한 의견 수렴
 - 문제점의 검증과 개선대안 도출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계획에 대한 인식도 파악
- 국토계획의 동향 및 문제점
 - 국토계획의 성격
 - 국토문제의 회고와 반성
 - 국토계획 추진체계의 문제점
- 국토계획 집행/추진체계의 동향과 기본방향
 - 국토계획의 권한 배분과 지방정부의 계획 및 집행력 제고
 - 주민 자율적 참여

- 국토계획과 관련한 국가계획들간의 연계체계 확립
- 지역·도시계획과의 연계도모
- 조직·재원·법 제도의 적정화와 효율화 도모

-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 국토기본법의 제정 운영
 - 투자재원 조달과 배분 효율화
 - 거시지표 예측운영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계획계약제의 운영
 - 조직·재원·법 제도의 효율적 연계 확보

- 국토계획 집행체제의 개선에 관한 방향 설정
 - 추진체계의 문제점
 - 집행체제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체제

- 재정부문의 합리화로 재원조달 효율화
 - 시급성과 재원 확보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의 도출
 -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 국토계획 집행체제 개선을 위한 관련 기초계획체계의 개선
 -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도·군 종합개발계획 등의 지역개발계획제도에 대한 집행체제 개선
 - 지방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체제의 일원화

3. 연구의 추진방법

- 현행의 국토계획 추진집행체제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관련전문가 인터뷰 를 시행하여 문제점을 도출
 - 집행/추진과 관련한 성격 규명
 - 국토계획 추진집행에서 문제시되는 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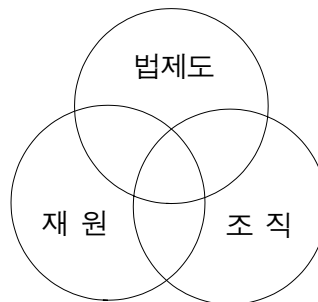
- 국토계획 집행체제의 세부적인 분석 실시
 - 집행 계통의 단일화와 책임 명확화를 위해 단계별로 집행상황을 조사
 - 각 계획간,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시켜 봄으로써 집행체제의 문제점 도출
 - 제4차 국토계획의 성격으로부터 파생되는 집행체계 분석

- 민간주체의 자율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점 분석

- 지방정부의 행정·재정능력에 따른 개발계획의 문제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획집행의 문제
 - 민간유치 활성화의 구체성 현실성 미흡

- 급변하는 사회에 계획계약제를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획집행에 연계성
 - 평가에 의한 단계별 분석
 - 지역계획에 중앙정부가 관여하여 생기는 지방정부와 마찰 분석

- 재원, 법, 조직제도의 연계를 강화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계획에 필요한 재원, 법, 조직제도의 현황조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제도적인 연계성 조사
 - 재원, 법, 조직제도간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하여 계획에 대한 미래예측



<그림 1-1> 집행 추진 3요소

- 장기적 계획에 필요한 예측운영체계의 구축과 운영 상황조사
 - 정부가 행정을 집행하고 관리할 때 예측운영체계의 활용빈도
 - 예측운영체계의 현실성 반영 문제
 -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예측가능 문제와 모니터링 체계

제2장

국토계획 집행·추진 관련 전문가 인터뷰조사

1. 인터뷰 조사의 목적과 방법

- 국토계획 추진/집행 체계의 개선을 위해 문제점 도출과 방법론과 관련한 연구자의 문제제기, 대안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
- 다양한 전문가 집단 중 학계, 연구계,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화 및 방문 인터뷰를 시행하되 대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택적 항목별 조사
- 인터뷰 대상자는 60인 규모로 추진하여 분석
 - 연구계 40%, 학계 30%, 공무원 30%
- 포스트 잇 방법을 통해 분석

2. 전문가 인터뷰 조사항목

문] 국토계획의 성과와 국토정책의 반성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국토계획수립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Top Down 계획을 지양하고 Bottom up 계획을 지향하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Bottom up 계획의 본질과 실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국토계획이 장기계획인데 집행이 의미가 있는가?

문] 국토계획을 정책, 프로그램, 투자와 관련해 집행,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아울러 이와 관련된 집행력 제고가 논의 가능한가?

문] 국토계획을 전담할 기구의 설치는 필요한가? 또한 필요하다면 어떤 성격으로 어느 곳에 설치하여야 할 것인가?

문] 재원조달, 예산배분과 투자계획 등이 연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연계성이 약하다면 어떤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문] 국토계획의 집행력 제고가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다면 어떠한 과제가 시급하며 어떤 절차를 택해야 바람직한가?

문] 기타 관련사항

3. 분석특기사항

- 국토계획의 집행, 추진에 대한 의미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단순한 투자계획 집행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의외로 많음
 - 정책, 프로그램, 투자 등의 복합적, 종합적 접근으로 인식가능성 확인
- 국토계획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관계에서(공무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고 그럼에도 의의가 있다고 기술
- 건교부 이외에 행정부처에서는 부처 고유의 계획추진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음
- 연차별 수정 및 예산 연동, 집행 계획의 수립요구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분석

- 국토종합계획이 표현 그대로 종합계획성격이므로 도시 및 지역계획, 경제학, 재정·행정학, 과학기술, 토목공학, 도시공학 지리학, 사회학 등 연관성이 있는 모든 분야의 폭 넓은 의견이 담겨지는 계획이어야 하며 특정분야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제시들이 있었음
-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거의 동의하면서도 표현방식과 우선 순위 등에서 상호차이 존재

국토계획의 동향 및 문제점

1. 국토계획의 성격

- 미래 국토발전의 지침 설정
 - 21세기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 국토발전의 나침반 역할 수행
 -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 정부, 기업들간에 있어서 상호연관성을 부여
- 국토계획의 전략
 - 현실적인 21세기 국토발전의 전략을 제시
 -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교통, 주택 등 사회 전반적인 주요부문의 계획내용 및 정책수단 제시
- 민간참여계획
 -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참여계획의 성격을 가짐
 - 계획의 과정을 중요시하여 국민, 연구단체,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미래 국토를 균형적으로 설계하는 계획의 역할 수행

2. 국토계획의 기간

- 제1차 국토계획(1972~1981), 제2차 국토계획(1982~1991), 제3차 국토계획(1992~2001)은 모두 10년을 단위로 수립·집행

- 제4차 국토계획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로 20년의 장기적인 국토계획으로 국토에 대한 미래상을 내다보는 계획
-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는 초기 5년의 실천계획(2000~2004)포함

3. 국토계획에 따른 국토문제

1) 『국지중심의 국토구조』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지속

- 경제성장과정에 정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과밀, 환경 오염 등 사회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 정부축의 인구비중은 43.8%('60)에서 73.3%('95)로, 제조업체수 비중은 56%('60)에서 80%('95)로 증가
 - 정부축에서 벗어난 지역은 경제적 낙후와 투자부진으로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 환경문제, 토지가격상승 및 주택부족 등의 과밀문제가 발생

2) 지역간 대립·갈등 심화로 인한 국가응집력 약화

- 근대화·도시화 과정에서 투자의 지역적 편재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지역간 대립·갈등이 뿌리깊은 단층적 사회구조를 고착시키고, 이에 따라 국가응집력이 크게 약화
 - 영·호남간의 지역갈등
 -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대립
 - 지역내의 낙후지역과 개발지역간의 갈등
 - 강 상류지역과 강 하류지역간의 대립 (대구 위천공단문제) 등

3) 난개발, 환경악화 및 관광·여가활동 기반의 불비

- 자연과 조경을 도외시한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
 - 획일적인 시설공급 및 고밀도 일변도의 개발관행 지속
 - 하수·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수처리율은 28%에 불과하여 4대강 수질이 악화
-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주거복지수준이 뒤떨어짐
- 전원적 환경·레저·관광·문화를 중시하는 국민의식 변화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토여건 존재

4)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국토

- 아직도 높은 땅값, 행정규제, SOC미비 등으로 외국투자의 유치여건 미비
-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이라는 이미지 등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

5)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의 지속적 증가
 - GDP 대비 물류비용 : 14.5%('90) → 16.4%('96)
- 국토의 동서간 연결 인프라의 부족으로 지역경제자원의 부가가치화에 장애
 - 전체 물동량의 70%가 경부축에 집중
- 국제적 교통시설의 부족은 국제경쟁력 강화의 장애요인

6) 국토 3면의 해양 및 지정학적 조건의 미활용

- 제2의 국토인 해양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국가의 부가가치 증대와 국민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활용에 등한시

- 바다 3면과 내륙, 대륙을 통합한 지정학적 여건을 국가옹비의 자원으로 보는 관점 및 전략 부족

7) 남북한의 분단

-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21세기로 넘겨지는 숙제
- 남북분단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 (대륙·해양의 이중관문) 활용에 물리적 한계 존재

4. 국토계획 추진체계의 문제점

1) 관련계획간의 연계성 및 보완성 결여

- 국토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유사한 계획이 부처별로 추진되어 계획간의 위계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표 3-1> 현행 국토계획의 종류

공간적 범위	관 련 법 (부 처)	계 획
전국 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자연환경보전법 과기처 정보통신부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지역개발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환경개선에 관한 장기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보화 관련계획
권역 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도 개발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도서개발계획 오지개발계획 폐광지구개발계획
지역 계획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도시계획, 상세계획 도시재개발계획 주거환경개선계획주권생활개발계획 연구단지관리계획

- 국토계획법 체계는 전국계획-도계획-군계획 등 행정단위중심의 계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국계획과 도계획 사이에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계획 등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계획이 있음
 - 국토계획과 도시계획간 제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계획내 도시지역의 개발계획 관련사항이 배제되어 있음
 - 부처별로 유사한 계획의 존재로 계획간의 상충
- 통합시의 등장 등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관련 공간계획간 역할설정이 불분명해짐
 - 통합시에 있어서 군계획과 도시계획간의 관계 설정 필요

2) 국토계획과 부문별 계획간의 연계성 결여

- 교통, 통신 등 부문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총체적인 효율성 저하
 - 국토계획과 부문계획의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미비
- 국토종합계획이 경제사회 5개년 계획, 재정계획, 부문별 투자계획 등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이 낮음
 - 예산운용과 계획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국토계획의 역할 미흡

3) 국토개발사업의 집행체계 효율성 저하

- 국토개발사업의 집행에 관한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이 원활하게 조정되지 못함
 - 국토개발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들이 여러 중앙부처에 산재해 있는 반면,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되어 있음
-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인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상의 고려 불충분
 - 단일연도 기준의 예산 확정, 신규투자 중심의 예산배정 등으로 장기적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는 국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곤란
- 건설산업 관련제도의 정비미비와 관행의 답습, 구조적인 병폐로 인해 부실시 공이 만연하여 국토개발사업의 질적 저하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시설물의 이용상 안전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에 효율적 역할배분 결여

- 계획과정상에서 지역별 기초조사, 계획수립 및 집행권한이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저해
 - 중앙집권적인 계획수립 및 자원배분방식으로 인해 자치단체는 수동적인 집행기능을 주로 담당
 -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일련의 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지역간 갈등 증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지역이기주의 의심화 등으로 국가적·광역적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발생

5) 불확실한 계획내용의 확정

- 일부 계획내용이 비합리적이고 현실 적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이를 추진하려다 마찰과 갈등 초래
 - 향후 여건변화나 자원의 한계, 민간부문의 여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6) 급변하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탄력적 예측·계획체계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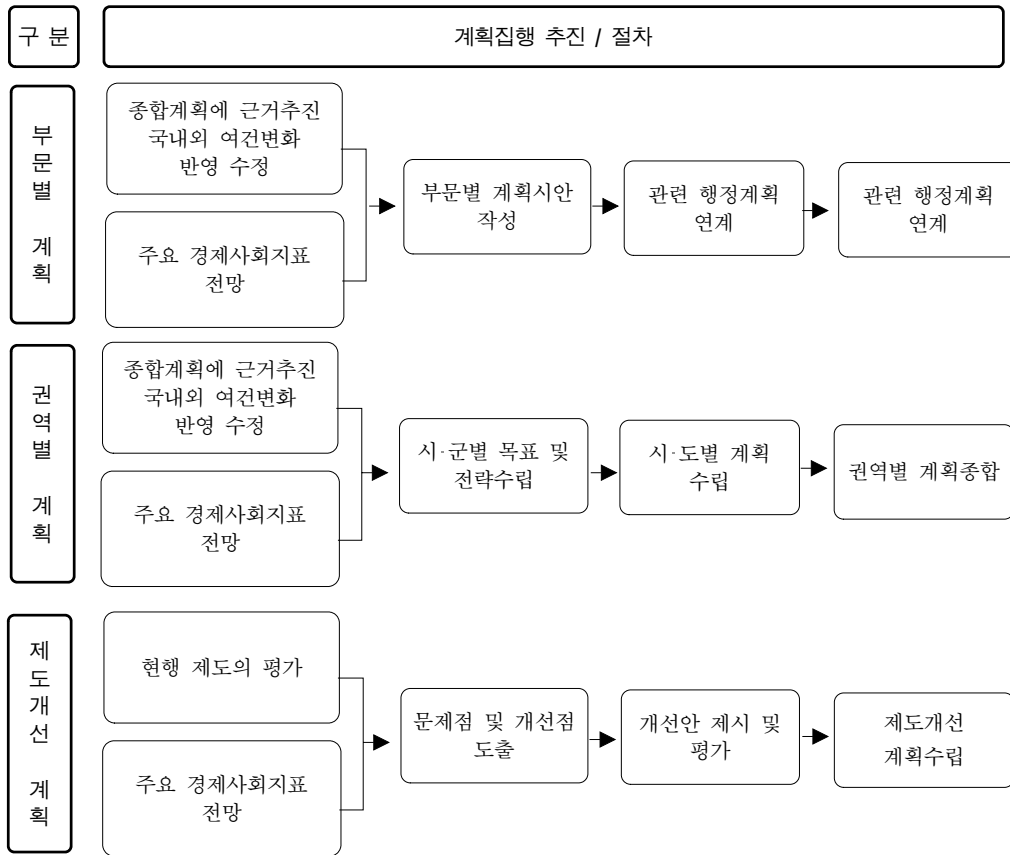
- 급변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할 계획체계의 부재
 - 계획 수정을 위한 연동계획의 제도화 필요
 - 예측체계운영개선을 통한 실천력 제고

국토계획 집행/추진체계의 동향과 기본방향

1. 계획 추진체계의 분석과 애로요인

- 현행 국토계획의 추진체계는 계획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의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치 못하고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과 상호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유사한 계획의 존재로 상호연계, 집행의 우선 순위 등에 혼란 발생
- 국토개발관련 실천력 있는 R&D계획의 미비로 고비용 구조의 정착과 계획의 실효성 저하
 - 투자의 효과성이 저하
-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전문인력과 조직, 재원부족 등이 계획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
- 지역간 개발경쟁으로 지역적 이기주의(NIMBY)가 팽배하여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고려한 국가적 통합·종합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 초래
- 부문별 계획, 권역별 계획, 제도개선 계획 등의 추진집행절차가 다기화되어 있고 향후수요가 부정확하여 재원조달계획이 미흡
 - 따라서 계획은 계획이고 추진은 별도 계획에 의해 진행

<표 4-1> 계획집행 추진 절차



2. 집행체계 개선의 기본전략

- 국토계획의 권한배분과 지방정부의 계획 및 집행능력 제고
- 지역주민의 활발한 자율적 참여를 통해 지역개발체계를 정립
- 국토계획과 관련한 국가계획들과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연계 도모
-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 강구
- 추진체계의 3요소인 조직, 자원, 법제도의 적정화와 효율화 도모

- 국토계획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측운영체계 확립
 - 합리적 투자수요 도출과 재원확보

3. 집행체계 개선 기본방향

- 국토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이 하위계획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계획체계의 정비
 -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도 및 군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및 일 반시의 경우에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
 - 도시기본계획을 개발계획체계로 전환하여 시종합개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으로 대 체하고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흡수
- 지역개발계획제도의 일원화 및 지원제도 강화
 -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도·군종합개발계획 등의 지역개발계획제도를 국토계획체계로 일원화
 - 개별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계획, 농어촌정주권계획, 낙도·오지개발 계획 등 동일지역에 중첩적용되는 계획제도의 단순화
 -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있어서 지역의 개발수준을 감안하여 차등지원방안 을 강구하고 지역개발 지원체계의 체계적 정비 추진
- 장기적으로 중앙부처, 도, 시·군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중앙부처, 시·군으로 전환
 - 계획집행의 위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 추구
 - 장기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기능을 타부처 이관과 지방으로 이전
- 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및 환류제도의 확립
 - 매년 계획내용의 실천여부와 실효성, 지역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계획집행 촉진 및 지원 강화
 -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연동화 계획체계를 확립하여 장기계획의 유연성 제고. 2년 실시 1년 평가체계 도입
 - 계획기간중에 발생한 여건변화와 추진실적 평가내용을 연동화계획에 반영. 여건변 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예측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
- 장기종합개발계획인 국토계획에 대한 부문별 중단기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 도화

- 국토종합계획은 장기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교통, 주택, 수자원 등 부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정책을 실천
 - 지역에서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중단기 실행계획의 도입을 검토
 - 부문계획, 실행계획은 종합계획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과 투자사업의 내용을 제시
- 부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국토개발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과 예산을 연계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예산지원하고, 지원대상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평가
- 국가와 자치단체 양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간 계획계약방식을 도입
 - 계약의 실행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재정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자원분담(matching fund) 제도를 채택
 - 비용분담비율은 사업의 성격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하되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국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가부담을 상향 조정
- 지역개발관련 위임사무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의 계획, 입법, 조직관련 권한을 강화함
 - 지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관련권한을 환경관리, 경관통제를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지역개발분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협동계획제도를 도입
 - 기능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동적인 계획수립을 제도화하여 행정구역 단위계획을 보완
 - 지방자치단체협회, 조합 등 자율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조사연구, 사업내용 조정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공동계획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초국경적 개발계획(cross-border development planning)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 지방고등고시제도와 지방전문직선발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개발분야 전문인력을 선발
 - 중앙부처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로의 파견과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촉진
 -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대학원, 민간기업 등 위탁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 중앙정부의 계획 조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관장하는 행정상 독립기능을 갖춘 국토개발 전담기구 신설방안 검토
 -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국토 및 지역정책을 조정·통합
 - 합리적 상향식 지역정책 틀 아래 종합적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를 유도·촉진
 - 사회간접자본 부문별 사업의 투자시점 및 내용 조정, 지역정책의 조정·발의·집행, 정책 및 사업의 추진평가

-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의대상 및 범위를 확대
 -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은 국토개발 전담기구가 담당
 -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종합조정 및 관련제도의 개선, 지역정책의 조정, 중앙과 지방의 투자분담 등 각종 정책의안을 심의·의결

4. 재정부문 개선 기본방향

- 국토계획의 행재정부문 위상을 제고하여 계획수립과 집행이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유도
 - 조직, 재원, 제도의 합리적 개편

- 중장기 국공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개발투자 재원조달
 - 장기채 위주로 발행하되 시장실세금리를 반영
 - 다양한 국공채 상품의 개발운영

- 지방채 발행의 합리적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관한 재량권을 확대하되, 상하수도, 교통시설, 공공체육 시설 등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발행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총량규모를 설정하고, 자치단체는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채 계획 수립
 - 기금이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정부재정자금과 시장공모를 통해서 지방채 인수를 확대하고, 공모채 인수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강화
 -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관(예: 미국의 지방채은행, 일본의 지방금융금고 등)의 설립을 검토
-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투자의 효율화를 병행하여 투자재원을 확보
 -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가격을 통한 수요조절기능을 수행하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도록 함
 - 민간 등 사용자측이 참여한 과학적 원가분석을 통해 공공요금 수준 결정
-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유인책을 강구
 - 다양한 공공재중 공공성의 상실정도 측정을 통해 민간참여 유도
 - 예비타당성을 통해 민간참여 가능사업의 도출후 경쟁을 촉진하여 민간참여 활성화
 - 정부의 제한된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투자유인이 많은 수도권에 민자유치를 확대하고 정부는 지방개발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도시인프라에 대한 민간참여를 위해 다각적인 전략수립
 - 도시 인프라에 대한 국제적 선진화된 민간참여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도시 인프라 공급법의 제정추진
-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책 등을 강구
 - 민자사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절차에 의한 사업의 지연을 방지
 - 개발촉진지구, 지방재정력이 취약한 지역 등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재정지원, 토지이용 등 지역별로 차등적인 민자유치 전략을 수립
- 민자사업에 있어 다양한 민간참여방식의 허용
 -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에 따른 위험도를 줄일 수 있도록 민관합동법인 설립 추진
 - 민자유치전략 수립시 새로운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도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이를 민간부문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투자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활성화
 - 중소기업이라도 사업의 운영 및 기획능력이 뛰어나는 경우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금융기관도 단순히 재원을 지원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함
-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 민영화 매각자금을 국토개발 투자재원으로 활용
 - 중앙정부 소속의 공기업중 지방으로 분산가능한 기업은 일차적으로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차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해당기업의 민영화를 결정하도록 함
 - 민영화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을 국토개발관련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자금으로 활용
- 자본 및 금융시장 자유화추세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외국자본을 유치
 - 외국인 주식투자, 외국법인의 민자사업 참여허용과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상업차관의 도입을 적극 추진
 - 상업차관의 허용은 국내통화 및 물가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검토
- 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장치 마련
 - 장기적으로는 외국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주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법인의 단독투자도 가능하게 함

제5장

국토계획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 '국토기본법'의 제정운영

-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의 국토의 장기적·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제도를 포함
 -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체적 능동성을 갖는 국토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 국가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근거한 장기 국토계획수립 유도
 - 재정과 집행의 현실성에 근거한 계획을 추진토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보전과 이용에 있어서 이용 속에 환경보존과 타협적인 개발논리의 정립(지속가능한 개발)
- 미래 지향적인 국토계획의 기본이념 확립
 - 미래 발전을 지향하는 적극적 대안이 필요
 - 급변하는 세계 국가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
 -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총체적 조화를 통해 지역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종합성을 도모
 - 한반도의 동북아 경제권 요충지로 해양개방형 국토전략 추진
 - 국토의 정보화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필요
 - 국제화·지방화·개방화를 조화시킨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목표설정
- 지방계획 및 부문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제도화
 - 국토계획이 상위 계획으로써 기준이 됨
 - 지방계획간 또는 부문계획간의 상호충돌 및 부조화 방지
 - 유사계획의 통합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적정화

- 각 계획간,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투자 스케줄을 관리 수치화함으로써 시의 적절한 계획수립추진
 - 지방계획·부문계획과의 단위별 협의회 구성
 - 상·하위 계획간 규제와 간섭적인 성격을 벗어나 상호보완적 성격으로 제도 개편
 - 각 계획수립의 목표·방법·수단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획수립과 개발방향을 점검함으로써 조정자의 기능 수행
 - 하위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상위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하위상달식 흐름을 포함
- 관련 계획간의 혼선방지 및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
 - 집행명령 계통의 단일화와 책임 명확화
 - 사업추진의 결과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집행상황을 단계별로 조치
 - 지방간 유사계획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호 협의·조정역할을 수행
 - 국토계획과 하위계획간의 실행기간에 따른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규제와 유인책을 마련
 - 집행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

2. 국토관련 지표 및 국토센서스 조사체계의 구축운영

- 급변하는 사회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지표 예측운영체계 수립
 - 지역별 인구, SOC스톡, GRP, 지니계수, 지역별 격차지수 등 국토관련 지표체계의 구축
 - 일반 거시지표와 연계하여 국토관련 지표의 예측
 - 지표관리체계를 통한 Plan-do-check-action에 의한 계획을 유도
 - 과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통계계량적 분석으로 미래예측 전망
- 장기적 계획의 효과적인 집행 및 현실성 제고
 - 장기적인 계획의 경우 정부의 권한체계가 명확하여야 올바른 계획이 가능하고 국내외 여건변화 및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현실성 부여가 중요함
 - 장기적 계획은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과 상호 연관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위계획과 상호 연계되면서 집행의 우선순위가 정립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지표운영체계 구축이 필요

- 국토센서스 DB구축과 정책·사업별 모니터링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국토개발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가능토록 국토센서스 DB구축
 - 국토개발 관련 개발·발전계획의 현실성 제고, 실천력제고
 - 국토개발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
 -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국토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연계운영
- 정확한 향후 부문별 투자수요 추정과 국가필수 우선사업의 선정
 - 지표체계운영과 연계하여 부문별 수요를 추정하고 국가 필수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투자사업을 관리
 - 하위계획과도 상호연계된 집행의 우선순위 정립

시간축						
주 체	중앙정부 + 지방 + 민간참여	정 부	정 부 + 민 간	평 가체 계	수 정 (여건변화 반영)	계 획기 간 종 료
주 무부 처	건설교통부		총리실(건교부협조)			
성 격	법 정 계 획			연 동 계 획		

3. 계획계약제(plan contract)의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획집행에 대한 업무협약제도 도입
 - 지방정부의 계획 실천력에 근거한 재정적 지원
 - 객관적인 외부평가에 의한 정책집행 상황의 단계별 추이 분석
- 지역 이기적인 계획수립의 방지와 공정한 재정적 지원 가능
 - 공익적 차원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균등한 지역분배정책이 필요

- 공정한 재정배분을 위해 지역별 인구, 면적, GRP, 낙후도를 고려하여 배분
 - 주변지역과의 계획 연계성 및 국가차원 계획의 국익차원을 고려
 - 국가 전체적 조화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역계획에 중앙정부가 관여
-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부의 국토계획기능 강화
 -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살린 지역계획의 수립과 집행
 -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 지역중심의 계획체계로의 전환
 - 지역민의 욕구 및 발전전략과 부합한 계획
 - 지역주도의 사업선정과 상향식 지역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투자역량이 예측가능한 계획이어야 함
 - 국토계획의 권한배분과 집행능력 제고
 -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계획권한을 최대한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정과 중재자의 역할을 함
 - 집행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재정적 지원을 성과급으로 지원

4. 조직, 재원, 법제도의 효율적 연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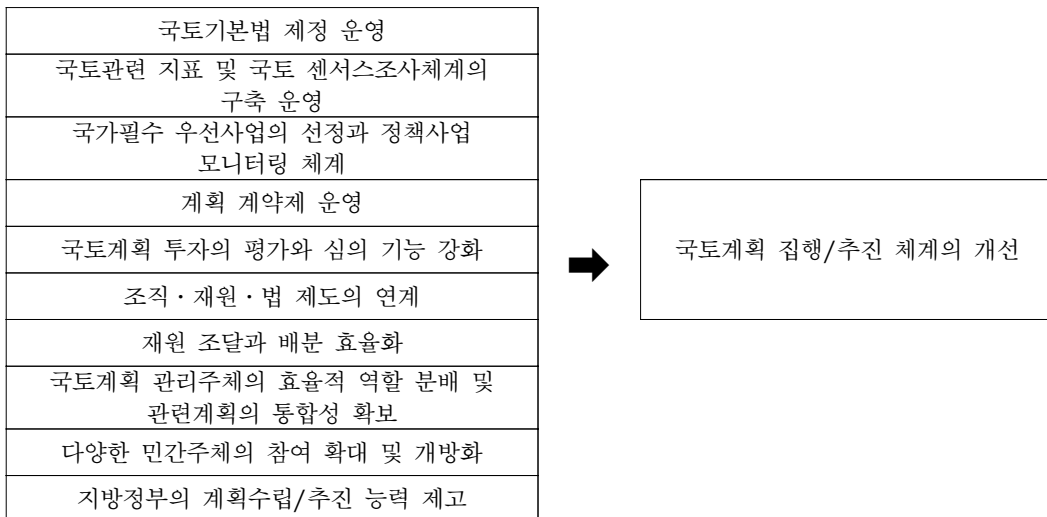
- 국토계획투자의 평가와 심의기능 강화
- 국토계획 관리주체의 효율적 역할분배 및 관련계획의 통합성 확보
 - 특성 없는 유사중복 계획의 통합으로 효율성,경제성 제고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역할배분
-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 확대 및 개방화
 - 지역주민의 직능별대표의 참여
 - 계획 추진 과정에서의 정보공유
 -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SOC에 투입
 - 민간주체의 수익성 확보와 투자위험부담의 민·관간 분담체계 확립
 - 민간유치 담당부서의 전문성 강화

- 국토계획체계의 정비 및 계획권한의 합리적 배분
 - 계획권한 배분체계의 확립
 - 지방정부의 계획수립능력 제고
 - 국토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참여의 기회 확대
 - 국토계획·투자에 대한 평가와 심의 기능 강화

- 국토계획 관련 인력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확보
 - 국토계획의 예측운영체계 구축
 - 국토개발관련기술의 진흥
 - 계획계약제(PLAN CONTRACT)의 운영
 - 국토계획 관련조직(기구)의 구성

- 지방화·정보화에 부응한 추진체계 마련
 - 국토관련자료의 DB구축 및 활용체계 구축
 - 국토계획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조정 및 통합성 확보
 - 광역지역계획제도의 도입(수도권정비계획과 같은 수준의 계획)

- 국토계획 기본이념의 재정립
 - 국토의 장기적·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포함한 ‘국토현장’의 선포
 - 각종 관련 국가계획을 연계한 체계적 ‘국토기본법’ 제정
 - 미래지향적인 국토계획 기본이념의 확립]



<그림 5-1> 집행체계 개선 흐름도

참 고 문 헌

- 국토연구원, 제 3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성과 분석 연구, 1997. 12
_____, 제 4 차 국토종합계획 분과별 자문회의 자료, 1999. 3. 3
_____, 일본의 21세기 국토 그랜드디자인, 1999.1
_____, 프랑스의 국토개발구상- 2015년을 향한 구상, 1999.1
양지청, 한반도의 통일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전략, 한국경제학회 발표논문, 1998.2

부 록

1. 향후 투자수요전망

- 제4차 국토계획기간 동안에 소요될 총투자액은 약 1010 조원으로 추정됨
 - 2000년~2010년 : 560 조원
 - 2011년~2020년 : 450 조원
- 통일을 고려했을 때의 SOC 투자 추정액(북한 중심):
 - 194조원(96년 가격)
 - 117 조원(주택 제외시)
- ※ 통일후 10년

2. 통일과 SOC투자 소요(북한 중심)

- 공공투자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다도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SOC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후 SOC사업의 투자비용은 체제통합방식, 토지수용방식, 인건비 및 건설자재 투입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체제통합방식에는 선체제전환후 통일방안과 선통일 후체제전환이 있다. 전자의 경우 교통 인프라 확충에 초기투자를 집중하고 차후에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업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교통 인프라 및 공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데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거점 지역발전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실 전자건 후자방안이건 재원의 한계로 성장축(growth pole)선정에 의한 거점개발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의 SOC을 어떤 수준으로까지 낙후성을 개선시키느냐를 미리 정한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관리투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차선책(second best policy)일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투자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비경제적이고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예산의 비효율성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후 10년간 투자소요를 남한의 투자소

요 추정경험을 반영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 토지수용방식의 경우 현재 북한의 토지공유제를 활용할 경우 토지수용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체제전환이후 북한지역의 토지는 북한지역주민에게 배분, 원소유자에게 반환, 경매를 통한 매각 등으로 사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체계적인 국토계획으로 사전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인건비의 경우 현재의 북한의 임금이 남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임금체계의 접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교적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동의 질적, 기술부문의 노동력은 대부분 남한에 의존적이리라 판단되며 이로 인한 실질적인 인건비 하락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설자재는 시멘트와 철강, 기타 골재 등으로 통일후의 개발 압력의 가중으로 건설자재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적으로 건설자재 상승요인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토지수용비용 등은 남한의 1/10~1/5수준으로, 전반적인 비용은 70%로 가정하였다. 또한 북한의 SOC 낙후도는 남한의 1/8 - 1/10수준으로, 투자소요는 남한의 50%를 가정하였으며, 향후 통일후 북한의 GNP성장율 12% - 15%로 가정하였다.
- 남한의 토지수용방식, 인건비 및 건설자재 투입 방식에 따라 산출된 남한의 SOC 투자소요를 근거로 하여 북한의 SOC투자액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면 지방부도로의 확충시, 도시부 도로의 확충시로 나누어 추정하는 방안의 총계합산방안이 있고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되 기간대별로 경제성장률 등의 가정을 차등화하여 추계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남한 SOC투자액은 국토의 공간구조개편, 국토개발기반 확충, 자원 개발 및 환경보전, 국민생활 환경정비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 국토공간구조개편 부문은 권역개발, 특수·특정지역개발을 포함하고, 국토개발기반 확충 부문은 교통·통신, 공업입지조성을 포함한다. 또한 자원개발 및 환경보전 부문은 수자원에너지, 농림수산업, 간척사업 등을 포함하고, 국민생활환경정비 부문은 주택, 상하수도, 택지, 휴양, 위락, 의료시설 등을 포함한다.

통일후 북한의 SOC투자액

(96년 불변가)

기 간	국토공간 구조개편	국토 개발 기반 확충	자원 개발 및 환경 보전	국민 생활 환경 정비	계
통일시점 ~ 10년	4.5조*10*0.35= 15.8조	7.5조*10*0.35= 26.3조	6.4조*10*0.35= 22.4조	37조*10*0.35= 129.5조	194조
10년 ~ 20년	-	-	-	-	-

주: 향후 투자수요는 다양한 함수형태를 가정하여 추정 보정함(S-curve, Exponential 등)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다른 가정에 추정

국토공간구조개편 4.5조, 국토개발 기반확충 7.5조, 자원개발 및 환경보전 6.4조, 국민생활환경정비 37조원 규모는 통일시점에서 향후 10년간의 중간 평균치임

- 상기 방법으로 추정시 통일후 10년 동안 북한의 SOC투자액은 총 194조원(1996년 불변가)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국민생활환경정비를 위한 투자규모중 상당부분이 주택 투자임을 감안하여 비용에서 60%를 제외하면 116.6조 규모가 소요된다.
- 구체적으로 투자소요액이 국토공간구조개편 부문에 통일시점에서 10년간 14조 8000억원, 국토개발기반확충에 26조 3000억원, 자원개발 및 환경보전에 22조 4000억원, 국민생활 환경정비에 129조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 이 추정치는 남한 SOC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통일후 북한의 개발 압력이 활발해질 것을 감안한다면 통일후 북한의 SOC투자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일 직후 남한은 내부적으로 승용차 증가등의 교통수요증가 요인뿐만 아니라 북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의해 교통 인프라투자를 증진해야할것이며 이 또한 SOC 투자액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될것이다.

통일 북한의 SOC 투자액 추정치

분석가	비용 추정 조건	SOC 투자액
정중재	- 통일후 북한의 SOC를 남한 수준으로 향상	약 55조원('94년 기준)
양지침	- 통일후 북한의 SOC소요추정(향후 10년간) - 국토공간 구조개편, 국토개발기반 확충, 자원개발 및 환경보전, 국민생활환경 정비의 4개 부문으로 구분 추정	약 194조원('96년 기준) 약 117조원(주택제외시)
이춘호	- 통일후 10년 이내에 북한의 경제력을 남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SOC투자	약 240-340조원 (90년기준)
여흥구	- SOC유형별로 남한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한 결과	약 300조원
김흥배	- 현행 사회 간접자본관련 공공투자의 대 GDP 비중은 4%로 통일 후 이 비율이 유지	약 337조원

< 참 고 >

○ 국토개발투자 현황

국토개발투자와 총자본형성 추이

(단위: 10억, 90년 기준)

년도	국민총생산(A)	총자본형성(B)	총자본형성비(%)	국토개발투자(C)	C/B
1992	204,231	74,376	36.1	32,339	43.5
1993	216,162	78,279	36.0	32,193	41.1
1994	234,333	87,484	37.0	33,944	38.8
1995	254,704	98,374	38.2	36,886	37.5
1996	272,323	101,005	38.8	37,090	36.7
국토계획 투자	1,181,753	439,510	37.2	172,417	39.2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제3차 투자실적분석, 각 부처청, 1997년도 국토개발 투자실적 제출자료,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1997

○ 부문별 투자현황

부문별 국토개발 투자계획과 실적 추진율

(단위: 10억, 90년 가격)

부 문 별		'92~2001년간 총투자계획(A)	'92~96년간 투자실적(B)	추진율 B/A (%)
합 계		330,142	172,417	52.2
정주기반형성	소 계	14,376	727	5.1
	특수·도시개발	9,277	238	2.6
	지역개발	5,099	489	9.6
국토개발기반 확충	소 계	95,902	30,526	31.8
	도로	42,072	13,580	32.3
	철도	16,324	2,377	14.6
	항만	5,025	840	16.7
	공항	3,048	1,327	43.5
	정보통신	10,186	6,389	62.7
	지하철	7,442	8,105	108.9
	공업	8,611	4,692	54.5
자원 및 환경보전	소 계	59,309	38,176	64.4
	수자원	1,550	997	64.3
	에너지	26,648	20,665	77.5
	농업	9,943	3,704	37.3
	환경	14,689	9,848	67.0
	산림	1,768	1,341	75.8
	수산	2,223	596	26.8
	방재	2,488	627	25.2
국민생활환경 개선	소 계	160,304	95,956	59.9
	상수도	3,696	1,830	49.5
	하수도	976	4,245	434.9
	주택	147,056	83,803	57.0
	생활서비스	1,615	3,323	205.7
	토지	1,366	670	49.0
	휴양·위락	4,066	1,096	27.0
	교육	575	653	113.6
	문화	954	336	35.2

주: '92~2001년간 총투자계획은 각 부처별 당초계획의 전망치이며, 1994년 경상을 1990년 가격으로 환산함 (1990=100 1994=129.6)

○ 투자재원의 조달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투자의 자원조달

(단위: 10억원, '75년 가격)

구 분	실 적 (A)	백분율 (%)	계 획 (B)	백분율 (%)	추진율(A/B)(%)
중 앙	5,503	31.7	5,512	39.3	124.0
지 방	1,967	11.3	1,442	10.3	99.8
기 타	9,909	57.0	7,065	50.4	136.4
계	17,388	100.0	14,019	100.0	140.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투자의 자원조달

(단위: 10억원, '85년 가격)

구 분	실 적 ('82~'91)	백분율 (%)	계 획 ('82~'91)	백분율 (%)	추진율(A/B)(%)
중 앙	42,329	30.7	43,600	30.6	97.1
지 방	18,227	13.2	20,090	14.1	90.7
기 타	77,195	56.1	78,794	55.3	98.0
계	137,751	100.0	142,484	100.0	96.7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투자의 자원조달

(단위: 10억원, 경상가격)

구 분	실 적 ('92~'96)	백분율 (%)	계 획 ('92~'01)	백분율 (%)
중 앙	38,894	16.9	134,245	28.6
지 방	19,492	8.4	70,962	15.1
기 타	172,255	74.7	263,746	56.2
계	230,642	100.0	468,953	100.0